



# 대구달서경찰서

제 2021-01502 호

2021. 8. 10.

수 신 : (주)탄탄구조엔지니어링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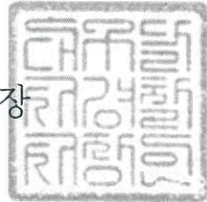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2021. 6. 18.	사 건 번 호	2021-003271
죄 명	저작권범위반		
결 정 일	2021. 8. 10.		
결 정 종 류	불송치 (혐의없음)		
이 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경제3팀 경위 박성호	☎	053-662-6808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대구달서경찰서장





**【별지】**

**【죄 명】**

저작권법위반

**【결정종류】**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2020. 8. 4.경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 기재된 고소인이 시공한 태양광 구조물 준공 사진 14장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의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법위반

2. 불송치 이유

-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 있는 태양광 구조물 사진과 동일한 사진 14장을 피의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인정된다.
- 피의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소인의 태양광 구조물 준공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해당 사진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공사에 참여한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거나 원청회사에서 준공 사진 용도로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가 전달받은 것이고, 일부는 인터넷에 검색한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제출한 일일업무보고서(제97쪽~제104쪽), 인터넷 검색 사진(제106

쪽), 원청회사 직원 진술(제79쪽), 고소인의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한다.

- 관련판례 : 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판 2005도3130], ②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대판 98다43366], ③ '솔섬' 사진에 대하여 누구라도 그 장소에서 동일한 각도로 촬영한다면 같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480]

- 이와 같이, 피의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들이 누가 촬영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의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들이 저작물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한 피의자가 대다수 촬영한 사진과 일부는 원청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인터넷을 통해 얻은 사진 등 그 소유권이 반드시 고소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진의 용도, 게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혐의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입증할 증거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3. 예비적 죄명 판단

○ 업무방해 적용 여부

- 고소인의 동종업계 후발주자인 피의자가 이전 고소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공사했던 태양광 구조물의 준공 사진을 피의자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고객들한테 다수의 공사를 한 회사임을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로,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할 수단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할 수단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 본죄의 '위계' 역시 신용훼손죄의 위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실제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편집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 '이전 참여 공사' 카테

고리에 게시를 한 것으로 실제 피의자가 참여한 사실 확인되는 등 본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 관계 명확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어 본 죄명을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적용여부

- 본 법률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본건 피의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근접해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어 본법에 적용할 수 없음



##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이의·심의신청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0 달서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장 (문의 박경식)  
42731

반송  
불요



1073082897884

2021년08월12일 제작

[접수국 : 광화문]



보통등기

경1 732 03 05

대구M 달성

대구 달성군 달성2차1로 53-0  
(주)유니테크시스템  
(주)탄탄구조엔지니어링 함신상 귀하  
43013